

## 경운대학교 창업친화적학사제도에관한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창업에 대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학생창업활동 촉진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 제2장 창업휴학제

**제3조(인정대상)** ①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.

②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닌 경우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한다.

**제4조(기간)** ① 창업휴학은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제도에서 허용된 기간과 별도의 기간이며 일반휴학 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.

**제5조(신청)** ①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.

② 창업휴학의 승인을 위하여 학생은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자등록증

2.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등본

**제6조(승인)** ① 위원회는 학생의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점검은 창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내·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진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창업휴학의 승인 및 거부가 가능하다.

**제7조(자격요건)** 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

2.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

3.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

② 단,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지정되지 않을 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이 가능하다

다.

### 제3장 창업대체학점제

**제8조(정의)** 창업대체학점 인정제(이하 '창업대체학점제'라 한다)는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칭한다.

**제9조(창업실습)** ① 창업동아리 활동 교과명은 '창업실습'이라 한다.

② 창업동아리 활동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한다.

1.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한 경우
2.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및 그 산하기관에 등록된 경우
3. 창업동아리 활동일지를 제출 및 평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

**제10조(창업현장실습)** ① 교과명은 '창업현장실습'이라 한다.

②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.

③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닌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한다.

④ 창업 이후에 '창업현장실습' 교과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신청 후 1개월 이내 창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.

⑤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 창업현장실습 기간에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야하며, 폐업 시 미이수 처리한다.

**제11조(이수학점)** ① 창업동아리가 '창업실습'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연간 3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다.

② 창업이 '창업현장실습'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.

1. 계절제 창업현장실습(4주(160시간)이상) 수행 시 3학점 인정
2. 학기제 창업현장실습(15주(600시간)이상) 수행 시 12~18학점 인정

③ 현장실습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하되 세부 운영사항은 창업교육센터 자체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**제12조(신청 및 승인)** ① 창업실습교과 신청 희망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창업동아리 신청서를 제출 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후 학사운영 관련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학점인정)** ① 학생이 신청한 창업대체학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교무처에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창업대체학점의 성적은 인정 Satisfactory(S), 미인정 Unsatisfactory(U)으로 표기한다.

## 제4장 창업학점 교류제

**제14조(정의)** ① 창업학점 교류제라 함은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강좌로 지정된 과목의 정규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칭한다.

② 창업강좌라 함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,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로 정의하며,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(창업가)정신, 창업, 사업, 지식재산권(특허)으로 한정한다.

**제15조(운영방식)** 표준화된 운영기분을 정하기 위하여 참여 대학간 창업강좌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 제정·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.
3. (기타) 기타 내용은 대학의 학사제도 규정에 따른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